

수산사업

어떻게 지원되나?

- '89 수산정책과

어민지원사업안내 (발췌) -

수 산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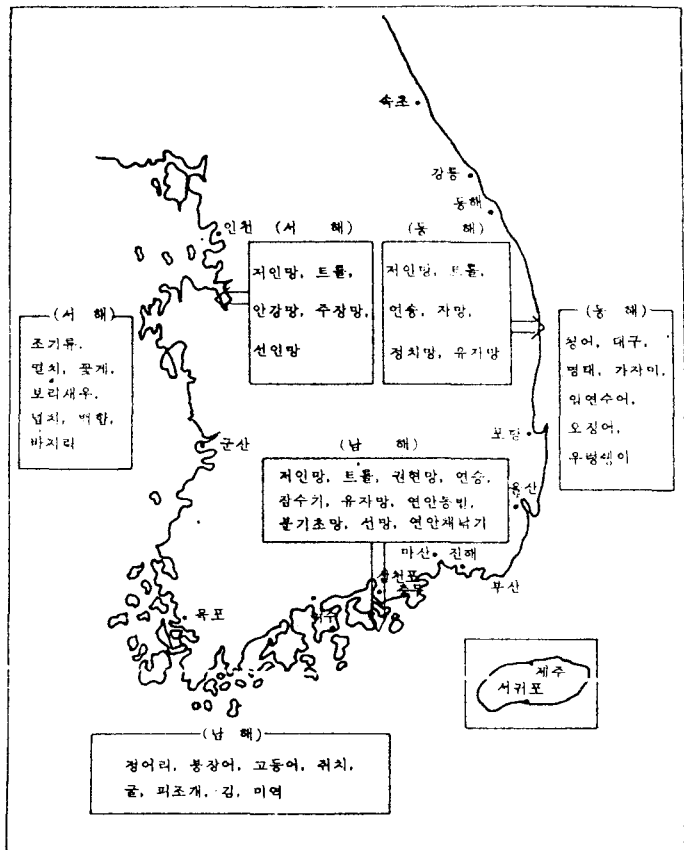
1. 우리나라 수산 자원의 분포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지리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해양국가로서 바다의 면적이 317천ha로 전 국토면적의 3.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서해안과 남해안은 대륙붕이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어 어패류 및 해조류 양식의 최적지이며,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수역으로 천혜의 어장을 형성하고 있어 3면의 바다는 막대한 수산자원의 부양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198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어업생산량은 321만톤에 달하며 그 중 연근해 및 양식 어업의 생산량이 240만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근해 어장은 우리나라 어업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보고입니다.
- 한편,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생물의 종류는 100여개 종으로서 매우 다양하며 어종별 분포상태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해안은 비교적 회유성이 강한 청어, 대구, 명태 등의 어류자

원이 풍부하고, 서해안은 꽃게, 대하 등의 갑각류와 패류양식자원이, 그리고 남해안은 고등어, 쥐치 등 어류자원과 패·해조류양식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연근해 주요자원분포



2.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의 당면 과제

-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선진수산물국으로 발돋움하였고, 식량 산업에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원양어업의 경우 144개 연안국 중 112개국에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타국의 입어에 대해 어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도 간척·매립에 따른 연안어장의 축소, 산업발달과 도시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 어족자원의 감소, 어업기본 시설의 노후 내지 미비, 어촌 환경의 불비와 어가소득의 상대적 저위, 어촌 인력의 질적 저하와 양적 감소 등 해결해 나아가야 할 많은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기능적이고 분리적인 어업정책에서 탈피하여 바다, 어촌을 통합한 종합적 개발 방식에 의한 ①바다자원의 합리적 보전관리 체계확립 ②어업의 능률산업화 ③어촌지역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과 소득원의 다원화 ④하부구조 및 복지시설의 확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산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3. 수산시책 방향

- 정부에서는 수산업과 어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수산업을 국민 식량산업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어민의 소득을 도시민 못지않게 증진시키며 어촌을 안락하게 영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1989년도에 달성

코자 하는 수산시책의 지표와 중점시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1,585억원의 정부예산과 지방비 75억원 및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수산진흥기금, 국민투자기금, 영어자금 등 수산자금도 6,500여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민주화·지방화·국제화에 부응토록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어업구조를 조정하는 등 장기 발전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지 표〉

- 수산물 생산 : 340만톤
- 수산물 수출 : 21억불

〈중 점 시 책〉

1. 연안 수산자원의 조성 및 소득배가
2.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
3. 원양어장의 안정적 확보
4. 어업기반 시설의 확충
5.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6. 연구기능 강화와 기술 개발 보급
7. 어민 지원의 강화

4. 수산예산 개요

1989년도 수산예산은 1,585억원으로 1988년 예산에 비해 24.9%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어업별, 사업별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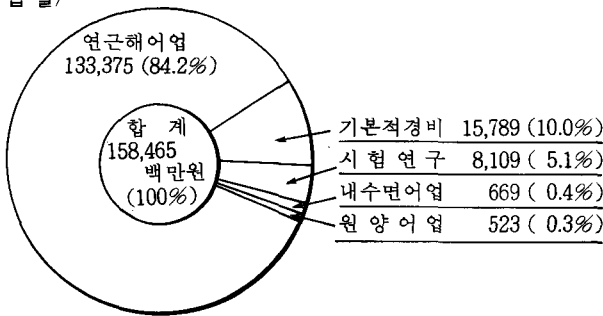
〈회 계 별〉

(단위 : 백만원)

	'89	'88	증△감	대비(%)
일 반 회 계	129,174	97,601	31,573	132.3
재정투융자특별회계	25,291	15,243	48	100.2
국 고 채 무	4,000	4,000	-	100.0

	'89	'88	증△감	대비(%)
계	158,465	126,844	31,621	124.9
사업비	142,676	112,790	29,886	126.5
기본적경비	15,789	14,054	1,735	112.3
인건비	12,382	10,713	1,669	115.6
기준경비	2,700	2,676	24	100.9
관서운영비	707	665	42	106.3

〈어업별〉



〈사업별〉

(단위 : 백만원)

	'89예산	'88예산	증△감	대비(%)
계	158,465 (25,291)	126,844 (25,243)	31,621 (48)	125
I. 사업비	142,676 (25,291)	112,790 (25,243)	29,886 (48)	126
1. 수산자원조성	10,770	10,317	453	104
2. 양식어장개발	4,732 (3,834)	6,445 (5,083)	△1,713 (△1,249)	73
3. 내수면어업개발	669	1,152	△ 483	58
4. 원양어업의 안정적확보	523 (400)	529 (400)	△ 6 (-)	99
5. 어항건설	55,045	46,363	8,682	119
6. 어로시설	5,821 (3,482)	5,204 (3,046)	617 (436)	112
7. 수산물유통시설	1,816 (1,025)	1,703 (964)	113 (61)	107
8. 시험연구 및 어촌지도	8,538	6,585	1,953	130
9. 수산자금	24,172 (16,500)	21,168 (14,000)	3,004 (2,500)	114
10. 어민지원	20,740 (50)	4,737 (1,740)	16,003 (△1,690)	438
11. 안전조업지도	6,628 (-)	5,470 (10)	1,158 (△10)	121
12. 기타경상사업	3,222	3,117	105	103
II. 기본적비용	15,789	14,054	1,735	112

※ ()는 재특내서임.

5. 증양식사업을 하고 싶은데....

○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증양식사업은 새로운 양식품종의 개발과 어촌계 다수어민의 소득원개발을 위한 어장개발 및 양식어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사업은 어류축양과 진주양식사업이 있고 어촌계 소득원 개발사업으로는 고막, 가무락, 바지락, 새꼬막, 우렁쉥이, 전복, 소라 양식사업이 있으며,

○ 양식기반시설로는 전복 종묘배양장, 사료저장고, 어류 종묘배양장, 김 냉동망저장고 시설사업이 있으며 김 냉동망저장고는 수협과 어촌계만, 사료저장고는 수협, 어촌계 및 어민 협업체에게, 어류 및 전복종묘배양장은 어촌계, 어민협업체, 개인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 '89 수산 증양식사업의 지원내용은

○ 수산 증양식 사업은 80%, 자담 20%로 지원하고 있는 어류 축양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비 보조 21%, 지방비 보조 9%, 융자 60% (연리 8%, 3년거치 5년 상환), 자부담 1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도의 요구를 참작하여 예산을 확보하게 되며 전년 12월말경에 수산청에서 시·도별로 물량을 배정하고, 이 배정물량에 따라 시·도(또는 시·군)에서 사업자를 모집, 선정하게 됩니다.

○ 시·도에서는 배정받은 수산증양식 사업물량을 예산편성 당시 요구사항 또는 자체 수산개발계획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배정하게 되며

○ 시·군에서는 시·군 공보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어촌계장을 통하여 배정내역을 통보하게 되므로 사업희망자는 적어도 3월 30일 이전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시·도에서는 어떻게 증양식 사업자를 선정하나

8. '89 증양식사업 물량과 단가는

'89년도 수산증양식사업의 사업량 및 지원단가, 1인(개소)당 지원 한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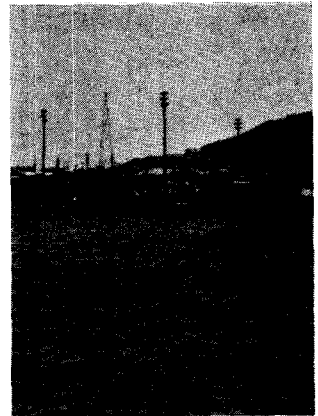
사 업 별	물 량	지원단가 (천원)	지원한도	도 별 배 정
주 요 패 류	140헥타	1,100	10헥타이내	경기20,전남110,경남10
새 썩 락	181 "	1,200	"	전남171,경남10
패 류 측 양	49 "	11,000	2헥타이내	충남8,전북5,전남13,경북13,제주10
우 령 쉼 이	18 "	5,000	"	강원18
김 냉 동 망	6,000 책	40	20책이상	경기1,200,충남1,500,전북1,000,전남2,300
진 주 양 식	3헥타	33,400	2 "	경남3
어 류 측 양	41개소	1개소	1개소	강원4,충남5,전북4,전남9,경북9,경남6,제주4
	(대 25)	100,000		
	(소 16)	50,000		
김냉동망저장고	2개소	25,000	1개소	경기1,전북1
전북종묘배양장	2 "	50,000	"	경북1,경남1
사료저장고	3 "	100,000	"	충남1,전북1,경남1
어류종묘배양장	2 "	100,000	"	제주2

* 주요패류 : 고막, 바지락, 가무락, 패류측양 : 소라, 전북
* 지원단가는 헥타, 책, 개소당 단가임.

9. 연근해어업의 허가절차는

○ 연근해어업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연안어업은 연안유자망 등 12개 업종이 있고, 근해어업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13개 업종이 있습니다.

○ 어업허가절차는 소정의 신청서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 및 명칭·기간·조업방법·조업구역·선박의 척수·선명·톤수 및 기관마력·채포물의 종류·양육항·신청자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고 어선검사증서사본, 선박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은 시·도지사에게 연안어업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근해어업허가 관련 이행사항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재허가 신청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60 일전부터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한수 어업 또는 허가가 제한된 어업은 허가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허가사항 변경신청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의 척수, 선명, 톤수 및 기관마력, 채포물 종류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어업허가장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 또는 시군에 신청하여야 함.

휴업신고
1 년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2 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음.

허가장 반납
어선이 침몰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6 월 이상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 또는 시군에 신고하고 어업허가장을 제출하여야 함.

허가장 비치
어업허가장은 항상 어선에 비치하여야 함.

허가사업 폐지신고
어업허가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도 또는 시군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어업허가장을 반납하여야 함.

수산종묘생산업 허가와 관련 이행사항

휴업신고
수산종묘생산업 허가를 받은 후 계속하여 1 년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에 신고를 하여야 함.

- 불이행시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허가 취소

신청자의 변경신고
수산종묘생산업자가 개명, 주소변경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시군에 신고를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어업허가장, 개명, 주소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사항의 변경신청
수산종묘생산업 허가를 받은 후 시설규모, 기술자 보유상황, 중요기기 및 시설, 종묘생산품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에 신청을 하여야 함.

10. 연근해어업중 신고어업 대상과 절차는

- 연근해어업중 신고어업은 일본조, 도수, 나잠, 초호, 손꽂치, 호망, 건간망, 투망, 새우조망 등으로 88년말 현재 10,000여종의 어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들 어업은 대부분 선박이 없거나 어로방법이 소규모인 관계로 자원량 증감과는 큰 상관없이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선마다,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구 또는 어업자마다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어업의 방법·시기·기간, 조업구역, 어선의 종류와 적재량, 기관의 종류와 마력, 채포물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비록 자원에 큰 영향이 없고 소규모일지라도 수산업법이 정한 제반 규제사항이나 의무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허가취소

수산종묘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어업을 지배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신고어업 관련 이행 사항

변경신고

어업감찰을 교부 받은 자가 어업의 명칭, 어업시기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어업감찰

어업감찰 재교부

어업감찰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군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

어업감찰 반납

어선이 침몰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어업감찰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어업감찰 회수

어업감찰을 받은 자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된 조치에 위반할 때에는 어업 감찰을 회수할 수가 있음.

어업면허 관련 이행사항

휴업, 어업권 이전, 어업권 분할 신청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자나 어업권 이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어업권 분할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에 신청하여야 함.

입어료 징수인가

공동어업권자가 입어자에 대해 입어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셔야 함.

표지 설치 및 중요살표 신고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장구역 및 어장기점에 표지시설을 하셔야 하며 중요살표 살포할 때에도 시군에 신고하여야 함.

어선사용인가

양식어업자 또는 제 1종 공동어업자는 양식장형망선, 자원관리, 잠수기척가 또는 기선형망허가 어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의 인가를 받으셔야 함.

11. 어업면허 절차는

- 어업면허는 제 1종 공동어업, 제 2종 공동어업, 제 3종 공동어업, 정치어업, 양식어업 면허 등이 있습니다.
공동어업은 어촌계에만 면허(인접 어촌계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수협에 면허)가 가능하고 정치어업이나 양식어업은 어촌계와 개인 모두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를 받기 위하여서는 어업면허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면허권자인 시·도지사는 어장이용 개발계획 범위내에서 수산업법이 정한 적격자 및 우선순위에 의하여 면허하고, 이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시·도지사는 관할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해마다 2회(6월, 12월말)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공보지와 시도(시군)·수협 등의 게시판에 면허코자 하는 지역, 품종 면적 등과 면허신청기간을 공고하고, 어촌계장, 지방신문 등 매스컴을 통하여 양식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어민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시로 어촌계장이나 시·군 수산담당자에게 어장이용 개발계획공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2. 어선건조, 개조 발주허가 대상과 절차

어선건조(개조) 발주허가 관련 이행사항

-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조정 등 수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하여 사전에 어업허가 기관으로부터 건조(개조)코자 하는 어선의 업종 및 크기 등에 대하여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려 건조, 개조발주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선건조, 개조 발주허가는 어업의 종류에 따라 원양어선은 수산청장이, 근해어선은 시·도지사, 연안어선은 시장·군수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 어선건조, 개조 발주허가 대상어선은 전 동력어선과 1톤이상 무동력어선으로서, 어선개조는 어선의 주요치수(길이, 너비, 깊이) 변경 또는 기관마력 변경과 어업종류 변경에 따른 어선의 구조나 설비변경시 개조 발주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어선건조, 개조 발주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건조, 개조후 동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후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선총톤수 측정 및 어선검사신청

어선건조(개조)가 완료되었을 때 한국어선협회에 어선 총톤수 측정(개측) 및 어선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5톤미만 무동력선은 바로 등록 신청).

- 첨부서류 : 설계도(40톤미만 어선 제외), 어선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어선검사에 관한 첨부서류
 개조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 어선검사증서도 첨부
- 불이행시 : 100만원이하의 벌금
- * 한국선급입급선은 한국어선협회에서 총톤수만 측정, 한국선급에 검사 신청

선박등기신청

20톤이상의 어선은 어선 총톤수 측정후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선박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어선으로 등록이 불가함.

어선등록(건조시)

20톤미만은 어선총톤수 측정 및 어선검사후, 20톤이상은 선박등기 완료후 시군에 어선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첨부서류 : 20톤이상 어선은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 및 선박등기부등본,
 5톤이상 20톤미만 무동력선 및 20톤미만 동력선은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5톤미만 무동력선은 건조 발주허가서 사본
- 불이행시 : 어선으로 사용 불가

변경등록신청(개조시)

어선총톤수 개측 및 어선검사 완료시에 시군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첨부서류 : 변경사실 증명서류와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또는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 불이행시 : 100만원이하의 벌금

어업허가(건조시)

어선등록이 완료된 후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함.